때 재산평정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ㅇ공용차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주사무소는 대부분 노선의 기점이나 종점 중에 한곳에 있으므로, 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을 조례의 부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ㅇ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안 제5조제1항제1호)

-조례안 :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정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이상

-수정안 : '재산평정가격'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으로 수정

ㅇ주사무소 위치구분의 적용시점(안 부칙)

-제정안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본칙의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심사결과

ㅇ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ㅇ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ㅇ없 음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중 "재산평정가격"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권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시장은 별표1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

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3㎞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이상.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②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④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①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

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권역별 행정구역

권 역 별	행 정 구 역
도 심	중구 전역,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제외)
1권역(강동)	강동구 전역, 송파구(풍납1·2동), 성동구(마장동, 왕십리1·2동, 행당 1·2동, 사근동, 도선동, 용답동, 성수1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광진구(중곡1·2·3·4동, 능동, 군자동, 구의1·2동, 화양동, 광장동)
2권역(송파)	송파구 전역(풍납1·2동 제외), 성동구(응봉동, 금호1·2·3·4동.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옥수1·2동), 광진구(자양1·2·3동, 성수2가2동, 성수2가4동)
3권역(서초)	서초구·강남구 전역, 용산구(용산2가동, 한남1동, 한남2동, 서빙고동, 이태원1·2동, 보광동)
4권역(관악)	동작구·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1·2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1·2·3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
5권역(구로)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전역
6권역(강서)	강서구·양천구 전역
7권역(은평)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전역
8권역(도봉)	도봉구·강북구 전역, 성북구(성북1·2동, 동소문동, 돈암2동, 동선2동, 정릉1·2·3·4동, 길음1·2·3동), 종로구(부암동, 평창동) 일부 지역
9권역(노원)	노원구 전역, 성북구(삼선1·2동, 돈암1동, 보문동, 장위1·2·3동, 안암동, 상월곡동, 동선1동, 석관1·2동, 종암1·2동, 월곡1·2·3·4동)
10권역(중랑)	동대문구·중랑구 전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0

2000년 5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0. 4. 21)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2000. 5. 1)
-보충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제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과